

일제강점기 이왕직(李王職) 태실의 민간 매각*

The Disposal of Taesil by the Yi Royal Office(李王職)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최 병택**

Byung Taek Choi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태실(胎室) 부속 임야의 관리 및 처분 과정을 알아보고, 태실(胎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20년대 이후 이왕직은 고정 지출의 증가와 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 이에 이왕직은 능원묘 및 태실 부속 임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물의 매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왕직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1907년 ‘제실유 및 국유재산 정리’ 과정에서 정리 과정을 밟았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이후 임야조사 사업과 관련 법령을 통해 산림의 개념과 소유권을 재정의하는 등 그 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이왕직 소유 능원묘 및 태실 구역에 대해서 만큼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 경계와 관할이 확정된 편이었다.

이왕직은 재정 확보를 위해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와 땔감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이는 당시 임산물 유통 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http://doi.org/10.56475/ygsr.2026.31.1.171>

논문투고일 : 2026.04.08. 논문심사일 : 2026.05.19. 게재확정일 : 2026.06.05.

* 이 논문은 2026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E-mail: newcbt@gju.ac.kr)

Professor at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별채에도 불구하고 산림 복구를 위한 여력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산림이 방치되었고, 그 결과 태봉 일대에서는 암장과 도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왕직은 1920년대 후반 태옹을 경성으로 이안하고, 태실 부속 임야를 민간에 매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왕직의 태실 관리와 임야 처분 과정은 단순한 재정 보완을 넘어, 식민지 지배하에서 전통적 왕실 공간이 해체되고 사유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왕직, 태실, 임야조사사업, 삼림법, 황실재산, 일제강점기, 임산물 유통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태실의 민간 매각과 그 이유 |
| II. 이왕가분묘부속지경계
사정과 태실 구역의 확정 | V. 맺음말 |
| III. 이왕가 태실 구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매각 | |

I. 머리말

일본은 강제합방과 함께 대한제국 황실을 일본 ‘천황’(이하 ‘일왕’)가 아래의 왕공족으로 강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순종은 ‘창덕궁 이왕’,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이왕직(李王職)’이 설치되었다. 이왕직은 단순한 행정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일제가 구 황실을 형식적으로나마 존속시키면서 동시에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였다. 이왕직 관제는 1910년 12월에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왕직의 직제와 함께 관련 업무를 궁내 대신의

관리 아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¹⁾ 이는 구 황실의 일상적인 운영마저 일본 당국의 감독 아래 두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었다. 관제 공포와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창덕궁·덕수궁 등 이왕가의 경비를 ‘이왕의 세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왕직 경비의 지변(支辨) 및 이왕 세비의 수지 감독에 관한 건’도 함께 발표하였다.²⁾ 이왕직에 지급되는 세비는 연 150만 원이었으며, 그 사용 내역은 매년 ‘세비 수지 결산서’로 작성하여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³⁾ 이로써 구 황실의 재정 운영은 처음부터 조선총독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왕직은 조선총독부가 지급하는 세비 외에도 조선은행 및 조선 상업은행 주식 등 기본재산의 운영 수입을 세입으로 삼아 운영비에 충당하였다. 당시 세간에는 이 기본재산의 평가액이 2억 원에 이른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정확한 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은 20~50만 원에 달하여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었다. 세비와 기본재산 수입을 합하면 연간 약 230만 원에 이르렀으니,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재원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⁴⁾ 그러나 이왕가의 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의례 비용, 궁궐 시설의 유지·보수, 소속 인원의 급여 등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고, 1920년대 이후에는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의 변화가 겹치면서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졌다.

1) 『朝鮮總督府官報』 106호(1911.01.09.) ‘李王職官制’.

2) 『朝鮮總督府官報』 106호(1911.01.09.) ‘李王職經費ノ支辨及李王歲費ノ收支監督ニ關スル件’.

3) 이왕직 세비는 1921년부터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개벽』 제18(1921.12) ‘汎辛酉의 回顧’ 참조.

4) 『삼천리』 제10권 제5호(1938.05.01.) ‘李王職 總財産 2億萬圓說, 李王職이란 엇든 곳인가의 解説’.

이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왕직은 응급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능원묘 주변 산림에서 목재를 벌채해 판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이왕직은 소유 토지와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태실(胎室)이 위치한 땅마저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태실은 왕이나 그 자제의 태반과 탯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시설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태를 인간의 운명과 깊이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보관하였다. 태는 주로 풍수지리적으로 길한 산에 돌로 만든 석실 형태의 시설에 묻었으며, 내부에는 태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 보호하였다. 태실은 ‘태봉’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시대 내내 능원묘와 비슷한 격을 갖고 있어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아왔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왕직은 능원묘와 태실을 유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상당수 태실 구역을 민간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태실 관리에 대한 이왕직의 인식과 입장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이왕가분묘부속지경계사정과 태실 구역의 확정

1920년대 이왕직의 재정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왕직은 일제 당국으로부터 매년 180만 원의 세비를 받았지만, 능원묘 유지비, 종친 생활보조비, 창경원 유지 경비, 이왕직 관료 급여, 도쿄 별장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을 내면 여유 자금이 부족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⁵⁾ 더욱이 1919년 고종 장례로 발생한 부채의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왕가가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행사나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길 때마다 심각한 재정 압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왕직은 세비만으로는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왕직의 재산은 ‘제실유 및 국유재산 정리’를 계기로 축소된 대한제국 황실 재산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었다. 1907년 7월에 이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은 이듬해 6월, 역둔토를 비롯한 능원묘 상당 부분을 국유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⁶⁾ 이 방침은 1908년 6월 칙령 제39호 ‘궁내부 소관급(及) 경선궁(慶善宮)소속 재산의 이속과 제실 채무의 정리에 관한 건’으로 공포되었으며⁷⁾, 후속 조치는 같은 해 7월 설치된 임시재산정리국이 담당하게 되었다.⁸⁾ 임시재산정리국은 궁장토·역둔토·능원묘 위토·산림원야 등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언론을 통해 해당 재산을 점유한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를 촉구하고,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재무감독국에 의뢰하는 방식을 취했다.⁹⁾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실 재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랐다. 특히

5) 『동아일보』 1928.10.27. ‘李王職歲費縮小, 내년비용도 이미 업서졌고 장시사를 폐지한 까닭으로, 그러나 明年만은 從前.’

6) 『調査局來文』 규 17827.

7) 『대한제국관보』 1908.06.29. ‘칙령 제39호, 宮內府所管及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과 帝室債務의 整理에 관한 件.’

8) 김중수(2020),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문화재』 제53권제1호..

9) 荒井賢太郎(1911),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1, 15~20쪽.

능원묘에 부속된 산림과 토지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소유권에 관한 법적 조치도 미비하여 조사가 더욱 어려웠는데, 산림과 토지의 경계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데다가 산림 소유권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근원은 조선시대 산림 제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조선 왕조는 산림 사점(私占)을 법제적으로 금지했다. 『경국대전』 형전 금제(禁制) 조항에는 “시장(柴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자에게는 장 80대를 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땔감과 목재 확보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만큼, 관청·궁가·개인 할 것 없이 배타적으로 임산물을 얻을 수 있는 산림을 확보하려고 울창한 숲을 점유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규정된 분묘 금양(禁養) 조항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산림을 점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규정은 관직자의 품계에 따라 분묘 주변 일정 보수(步數) 이내의 경작과 목축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구역의 배타적 이용을 허용한 것이었다.

분묘 금양의 범위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전통편』 형전에는 “비록 정해진 보수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좌청룡(左靑龍)과 우백호(右白虎) 내의 금양하는 산이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이 진입하여 무덤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좌청룡·우백호’의 구역은 절대적인 거리 기준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 이처럼 기준선이 모호했기 때문에 사점 산림의 경계는 개개인의 실력 행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었다.

왕실 역시 산림 사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국왕은 종친이나 궁방에 특정 지역의 산림을 ‘절수(折受)’해 주는 방식으로 임산물 채취에 관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했다. ‘절수란 일정 구역에서 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해당 구역 거주민에게 소작료 또는 입산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허용하는 조치로, 사실상 일종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와 7궁도 광범위한 산림을 사점하고 있었는데, 내수사는 경기도 · 강원도에 1,016필지의 산림을, 육상공은 800여 필지의 임야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과 지방의 각 관사 역시 산림을 절수 형식으로 확보해 점유했다.

1908년 삼림법이 공포될 당시에는 이처럼 경계가 모호한 개인의 사점 산림과 궁방 · 관청의 절수지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지적(地籍)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¹⁰⁾ 이 법은 일본인 임업 전문가 미치이에 미쓰유키[道家充之]가 입안한 것으로, 그는 1906년 대한제국 농상공부 농사시험장 기사로 초빙된 인물이었다. 삼림법의 시행으로 산림 소유권 신고가 의무화되었지만, 산림과 토지의 경계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유권을 명확히 확정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왕직 재산의 국유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적인 난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은 1908년 6월, 능원묘가 소재한 산림 가운데 내해자(內垓字) 이내의 땅만을 제실유로 인정하고 그 외의 땅은 국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¹¹⁾ 그러나 내해자 ·

10) 道家充之는 일본 大林區署技師를 역임한 임업전문가로서 1906년 大韓帝國 農商工部 農事試驗場 技師으로 초빙되었다.

11) 참고로 능(陵)은 제왕(帝王)과 왕후(妃)의 무덤을 뜻하며,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또는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이다. 그 외 왕족의 무덤은 일반인과 같이 묘(墓)라 불린다.

외해자는 능원묘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계선으로, 실제로는 지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해진 곳도 적지 않았다.

일제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1911년 2월 ‘이왕가분영부속 지정리표준’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기준은 태조 이성계를 기점으로 조선의 모든 국왕을 마지막 황제 순종과의 혈연 근친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이왕가 소유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¹²⁾

- 1등급 릉은 해당 부자(내해자 경내 전부)를 모두 이왕가 소유지로 삼는다.
- 2등급 릉은 내해자 구역 중에서 분묘 주변의 잔디 또는 풀밭의 바깥 경계로부터 50간(1간=1.82미터)까지의 땅만을 이왕가 소유지로 정한다.
- 3등급 릉은 분묘 주변의 잔디 또는 풀밭의 바깥 경계로부터 40간까지의 땅을 이왕가 소유지로 정한다.
- 4등급 릉은 분묘 주변의 잔디 또는 풀밭의 바깥 경계로부터 30간까지의 땅을 이왕가 소유지로 정한다.
- 원(園)은 분묘 주변의 잔디 또는 풀밭의 바깥 경계로부터 20간까지의 땅을 이왕가 소유지로 정한다.
- 묘는 분묘 주변의 잔디 또는 풀밭의 바깥 경계로부터 10간까지의 땅(이 자료에는 莎草地 10間 以內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이왕가 소유지로 정한다.

12)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CJA0010253 「李王家墳墓附屬地境界査定書類」.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태봉산(胎峯山)에 대해서도 잔디·풀밭의 바깥 경계로부터 10간까지의 땅을 이왕가 소유지로 확정하고, 해당 구역의 소유 및 관리를 이왕직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11년 11월부터 각 도장관에게 태봉 구역에 대한 실측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통첩을 발송하였으며, 그 회신은 현재 국가기록원 소장 ‘이왕가분묘부속지경계사정서류’에 수록되어 있다. 이 서류에 따르면 각 도장관은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소관 지역 내 태봉산의 태실을 조사하고, “잔디·풀밭의 바깥 경계로부터 10간까지의 땅”을 이왕직 소유지로 확정하였다.

1911년에 이왕직 소유 태실 구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목을 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임야와 토지의 구분, 임야 소유권 확정 문제에 대한 확정적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사도 30도 이상의 토지가 임야로 규정되곤 했는데, 일제 당국이 이런 방침을 채택하고 임야의 소유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은 1917년 임야조사사업에 돌입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왕직 소유 태실과 해당 구역 산림의 경계를 정한 것은 상당히 서둘러 취해진 조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는 1908년부터 산림법 제19조에 따른 지적신고를 받고 있었는데, 조선총독부가 임야 소유권 확정 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문제와 관련해 산림이라는 개념 규정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 산림은 토지와 연접해 있었고 상호 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에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땅에 농지를 조성하지 않는 편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경사도 30도 이상의 절험지에도 농지가 있었으며, 해당 농지에 있던 산림을 불태워 퇴비로 쓰는 등 산림 훼손 행위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땅의 경작자인 농민은 당연히 해당 개소를 농지로 인식하고 대대로 농사를 짓기 마련이었는데 일제가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시행할 때 바로 이런 땅을 농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임야로 규정해 토지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이 어디가 임야이며 어디까지가 토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년간 검토를 거친 끝에 1913년 “수목이 총생(叢生)하는 곳이거나 벌채적지(伐採跡地)로서 수목의 성장이 예상되는 곳”을 ‘산림’으로, “수목이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서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을 ‘산야’로 분류했다. 또 산림과 산야를 임야로 묶어 1917년부터 1924년 사이에 소유자를 확정하는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¹³⁾ 이처럼 임야에 관한 개념 규정과 소유권 조사는 무척 늦은 시기에 진행되었는데, 유독 이왕직 소유의 능원묘 구역에 대한 조사와 이왕직 소유의 산림 구역에 대한 확정은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는 임야조사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이왕직 소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안인 까닭이었다.

Ⅲ. 이왕가 태실 구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매각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일제는 1908년부터 3개년 동안 삼림법 제19조에 따른 지적신고를 거쳐 임야의 소유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지적신고를 이행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일제는 이 신고 과정에서 소유 의무자의

13) 朝鮮總督府(1913), 『朝鮮森林山野所有權ニ關スル指針』, 3쪽.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해 혼란을 낳았다. 1912년 일제가 발표한 ‘임야의 국유, 사유 구분 표준’에 따르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패지’, ‘관청이 양도한 증서가 있는 임야’, ‘영년(永年) 수목을 금양한 실적이 있는 임야의 점유자 등이 신고자로 지정되어 있었다.¹⁴⁾ 참고로 ‘영년(永年) 금양해온 곳’이란 “평균입목도 3/10 이상이거나 수목의 평균수령(平均樹齡)이 10년 이상에 달하는 산림”을 뜻한다. 즉 특정한 임야를 점유해 금양해 왔으면서도 해당 개소에 식림을 해 수목 평균수령을 10년 이상으로 유지한 실적이 있어야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일제가 ‘영년 금양의 실적’을 중시한 것은 식목을 통해 자연재해를 줄이고 농지의 식량 생산을 뒷받침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1908년의 삼림법 시행 당시에는 임야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적었다. 임야 신고가 이루어진 220만 정보 중에서도 사유지로 인정받지 못한 곳이 많았다. 삼림법 제19조의 조항에 따라 1911년까지 임야소유권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대략 52만 건에 이르며,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임야의 면적은 220만 정보였다. 당시 조선 내 전체 임야 면적은 1,600만 정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이 ‘신고가 완료된 임야’ 중에서도 ‘영년(永年) 수목을 금양한 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180만 정보 가량만 사유림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임야는 신고자가 없는 임야와 더불어 국유로 편입되었는데, 대개는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아서 마냥 국유로 편입해두고만 있다고 해서 일제 당국이 거둘 수 있는 이익은 크지

14) 「매일신보」 1912.02.04 ‘임야의 국유사유구분표준’.

않았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17년부터 임야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차 지적신고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했다.

임야조사사업은 부윤, 면장이 도장관의 지휘 하에 조사예정지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임야를 사점한 연고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소유자격 보유자가 그 소유권을 신고하면 면에서 채용한 측량원이 출장하여 측량을 실시하는데 이 때 신고자와 지주총대(地主總代)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측량 결과는 도장관이 주관하는 사정작업을 통해 확정되고 그 결과물을 다시 면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신고자가 확인하도록 한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야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일제는 이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1908년 삼림법 제 19조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국유지가 된 땅에 대한 지적신고를 받아낸 뒤 첫 번째 지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 임야를 국유지로 빼앗기게 된 사람들에게 해당 임야를 조림대부해주기도 하고, ‘영년 금양’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권도 인정해주었다.

참고로 조림대부란 조림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조림이 성공할 시에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다.¹⁵⁾ 그런데 조림대부를 받았다고 해도 해당 임야의 원래 연고자는 조림대부 계약에 따라 조림에 관한 의무를 질 뿐 해당 임야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었다. 임야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정은 소유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제는 임야조사 사업과 함께 각 군에 삼림조합을 만들고, 임야 소유자들을 이에 강제로 가입하게 했다. 삼림조합은 ‘산림녹화’를 명분으로 삼아 조합원에게 산불방지, 송충이구제 등의 의무를 지우는 한편 소유한 임야라고

15) 조림대부제도는 1911년 공포된 ‘삼림령’에 의해 시행된 제도이다.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필요한 임산물을 채취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다. 또 겨울철 난방용 땔감을 수집할 때가 오면 조합 직원을 각 면에 파견해 정해진 구역에서 제한적으로만 땔감을 채취하게 하고, 이를 감독하는 이른바 임목벌채지도 업무도 맡아 보았다.

한편 일제는 땔감과 목재를 비롯한 자원의 생산과 출하, 유통에 손을 대 ‘조합을 통한 집단 출하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신탄이 거래되기도 했고, 농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시초나 신재를 우마차 등에 싣고 소비지로 직접 가서 파는 일도 있었다. 또 신탄 수집 및 출하를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자, 도매상, 소매상의 구분이 그리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임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직종의 역할 구분이 뚜렷해졌다.¹⁶⁾ 임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당국이 만든 신탄공설시장을 중심으로 상행위에 종사했다. 경성부를 비롯한 각 지역 당국은 이 시장 이외의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땔감을 파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¹⁷⁾,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산물에 대해서도 그 생산의 합법성을 따져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했다.

일제강점기 임산물 유통 과정에는 생산지와 판매업자 사이에 중개인이 개입해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중개인은 대부분 신탄시장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도매상인 경우가 많았다. 일제 당국은 이 중개인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해당 임산물이 합법적으로 생산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지곤 했다.¹⁸⁾ 1920년대 이후 재정적으로

16) 朝鮮總督府(1925), 『朝鮮人の商業』, 326쪽.

17) 『동아일보』 1932.09.22. ‘목포 신탄 정매로 부민생활 대위협’.

18) 朝鮮總督府(1930), 『朝鮮に於ける公設市場』, 10쪽.

어려움을 겪었던 이왕직은 능원묘에서 목재를 생산한 뒤 이를 중개인에게 팔아넘겨 부족한 세입을 확충했다. 이왕직이 그 임산물을 팔고자 할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입목(立木)매각’ 공고를 내야만 했고, 이 공고에 게시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 이왕직은 주로 용건릉에서 임산물을 채취해 팔곤 했는데, 가끔 태실 구역 내에 포함된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별목해 팔기도 했다. 참고로 1925년 1월 고시된 이왕직의 ‘입목매각’ 공고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입목매각

제1호 경기도 수원군 화산 삼림: 적송 잡목, 용재(用材), 신재(薪材) 4,858본(本) 재적 7,910척체(尺滯), 각호 모두 근주지(根株枝)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으며 이는 입찰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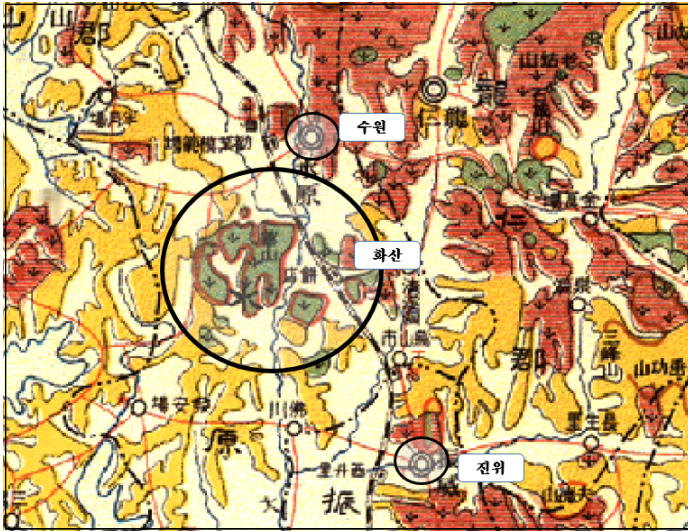
제2호 경기도 수원군 화산 삼림 내 적송 잡목, 용재(用材), 신재(薪材) 6,700본(本) 재적 8,296척체(尺滯)

제3호 경기도 개성군 상도면 제릉(齊陵) 삼림 내 적송 잡목, 용재(用材), 신재(薪材) 419본(本) 재적 294척체(尺滯)

…(중략)…

제6호 충청남도 공주군 목동면 숙종대왕태실 삼림 내 적송 잡목, 용재(用材), 신재(薪材) 1,360본(本) 재적 1,536척체(尺滯)

위 인용문의 ‘화산 삼림’은 사도세자와 그 부인 혜경궁 홍씨의 무덤인 용릉, 정조와 그 부인인 효의왕후 김씨의 무덤인 건릉에 부속된 삼림을 뜻한다. 이곳은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수원군에서 가장 임상이 좋은 곳에 해당한다.



<그림 1> 조선임야분포도(1910)에 표시된 수원 일대 임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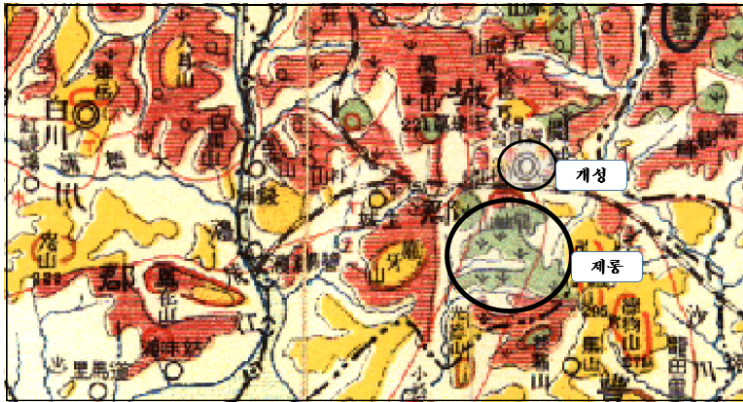
<그림 1>은 조선임야분포도에 실린 수원 일대의 임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임야분포도는 1910년 임적조사의 결과로 제작된 지도이다.¹⁹⁾ 임적조사는 통감부 시절 일제가 한반도 임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시행한 조사로서, 조선임야분포도는 그 조사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²⁰⁾ 이 지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은 나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무임목지에 해당하고, 노란색 부분은 약간의 임상이 남아 있는 초생지, 녹색은 비교적 임상이 양호한 성림지에 속한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화산 일대는 수원 일대에 가장 나무가 많아 상대적으로 울창한 산림이 있는 곳이며, 임산물 생산력을 어느 정도 보유한 곳이다. 따라서 화산 삼림은 수원과 그 인근 지역 용재 및

19) 배재수 · 김은숙(2019), 「1910년 한반도 산림의 이해: 조선임야분포도의 수치화를 중심으로」 『한국산림과학회지』 228호.

20) 배재수(2000), 「임적조사사업(1910)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과학회지』 제89권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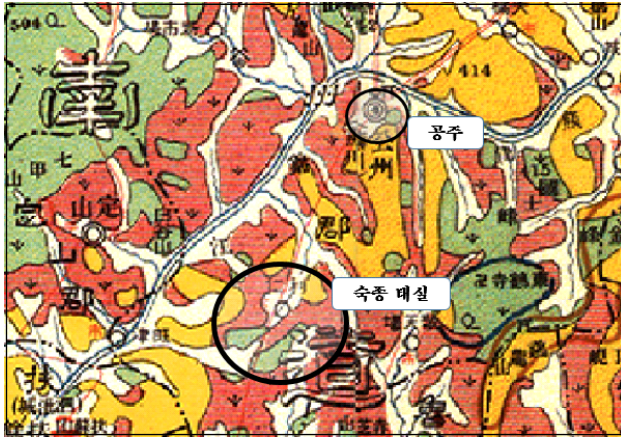
신재(땔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생산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왕직은 이곳에서 상당한 양의 용재와 신재를 생산해 임산물 중개인에게 팔아 넘겼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원비인 신의왕후 한씨의 능인 경기도 개성 제릉도 산림 상태가 양호한 곳이었다.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개성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제릉은 이 지역에서 가장 산림이 양호한 곳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가까운 개성과 경성 지역 임산물 중개인의 손을 거쳐 목재상과 신탄 상인에게 넘어갔다.



<그림 2> 조선임야분포도(1910)에 표시된 개성 일대 임상 현황

공주에 위치한 숙종태실 구역의 삼림도 임상이 양호한 곳이다. 공주 인근에는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임상이 좋은 곳이 적지 않았지만, 해당 개소는 국유림에 속해서 판매용 목재 생산을 위한 벌목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왕직이 숙종태실에서 생산한 목재와 신재는 공주, 대전, 조치원 등 인근 시가지에서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임산물 공급을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두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3> 조선임야분포도(1910)에 표시된 공주 일대 임상 현황

능원묘와 태실 삼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매각 수입은 이왕직 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오늘날 남아 전하는 이왕직 예산 관련 문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1930년도의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930년도 이왕직 세입 예산 내역²¹⁾

과목		액수(단위: 원)
관	항	
세비 수입	세비 수입	1,800,000
삼림 수입	삼림 수입	85,503
잡수입	기본재산 수입	36,869
	이자 수입	16,500
	창경원, 발물관 등의 관람료 수입	36,000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왕직 세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지급하는 세비 수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21) 국가기록원 문서 관리번호 CJA0003921 ‘昭和5年度李王家豫算.’

것과 같이 1920년대 이후에는 이 세비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별도의 수입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삼림 수입이 기타의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삼림 수입 외에도 이왕직은 기본재산에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했다. 이왕직 재산은 유가증권, 현금 등을 뜻하는 기본재산과 부동산으로 구성된 보통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보통재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임야였다.²²⁾ 이왕직으로서는 임야에서 나오는 임산물에 없었다면 제대로 세입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IV. 태실의 민간 매각과 그 이유

이왕직이 태실 부속 임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매각해 세입 확보에 활용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별채적지에서의 문제는 산림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나무를 베어낸 지역이 초기 식생인 풀이 자라고 관목이 복구되기까지는 약 2~5년이 소요되며, 숲의 구조가 완전하게 형성되는 데에는 20~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긴 회복 기간은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왕직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농원묘와 태실 부속 임야에서 나무를 베어내 뒤 해당 임야의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산림 복구 방법은 크게 자연 복구와 인공 복구로 나뉘어진다. 자연

22) 신명호(2015), 「일제강점기 이왕가 재산의 구성과 관리-기본재산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과학연구(부경대학교)』 제16권 제4호.

복구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리고 특정 수준만 집중적으로 자라게 되어 불균형한 숲이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 벌채 후 노출된 토양은 비가 내릴 때 침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산림의 건강한 복원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공적 방법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이왕직은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벌채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 복구를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했다. 그 탓에 능원묘와 태실 부속 임야의 일부는 방치되었고,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은 몰래 조상 분묘를 조성하거나 암장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간파한 이왕직의 예식과 소속 전사들은 1928년에 태실 관리 실태를 조사하며 민간인이 암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언론에서도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다.²³⁾

태옹이라는 것은 임금의 아드님이 나시면 그 태를 민간에서 처치하듯이 태워버리지를 않고 그것을 곱게 받아서 2중 질항아리에 넣어두게 됨으로 그 항아리를 태옹이라 한다. 태봉은 그 태옹을 파묻은 곳을 이르는 것이니 농묘자리를 명산에 택하듯이 태봉자리도 역시 명당을 찾아서 봉하여 온 것이다. 5백 년 동안 오늘날 그 태봉의 존재를 보게 된 수효가 겨우 50처, 그것이나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존귀한 어른들의 태가 무슨 지경에 갈지 모른다 하여 5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산(全鮮) 각지 명산마다 문헌 태옹을 차서 경성으로 뵈셔오게 된 것이며 이후 경성 부근 좋은 곳을 선택하여 차례로 한 곳에 뵈셔어 영원이 보유하자는 것이라 한다. …(중략)… 이미 29개소의 태옹을 경성으로 뵈셔온 이, 유 양전사는 아래와 같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다. …(중략)… 시대 변천에 따라 최근에는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었는데, 처소가 명당이라는 이만큼 그대로 두면 무슨 두려운 일이 있을까 하여 서울로 뵈셔다가 상당한 예우와 설비를

23) 이왕직에는 장시사(掌侍司), 서무과, 회계과, 예식과(禮式課), 영선국(營繕局) 등의 부서가 있었으며, 예식과에 속한 전사(典祀)는 제사 및 분영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배풀어 영원히 안전하게 되시자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9개소의 태봉을 파는데 여덟 곳에서나 암장시를 발견하였습니다. …(중략)… 이미 피서온 태옹은 시내 당주동 이왕직 봉상소에 깨끗이 피셨으며 오는 10월까지 전부 피서오게 되면 즉시 좋은 곳을 택하여 다시는 그같은 놀라운 암장사건이 나지 않게 될 것이옵시다.²⁴⁾

이른바 “시대의 변천에 따라”²⁵⁾ 태봉(태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방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그 인근 주민들이 구역을 침범해 조상의 분묘를 암장하는 일이 늘어났다. 태살이 있는 곳은 조선 왕실이 가려 뽑은 ‘명당’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높았기에 이런 일이 빈번해졌던 것이다.

태살에 대한 관리가 이와 같이 부실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왕직은 그 대책을 모색한 끝에 태살에 보관되어 있던 태옹을 가져와 한 군데에 모아놓기로 했다. 또 태살이 위치한 땅은 민간에게 별도로 매각한다는 결정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고래(古來)로 나라에서는 소위 상지감(相地監)이라고 하는 풍수를 전국에 널리 파견하여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을 구하게 하여 명당을 구하면 장차 왕족의 능원으로 쓰고자 미리 땅을 사두었던 것인데, 그 땅을 그냥 두면 다른 인민의 침범이 있을까 하여 태봉으로 정하여 두어 그 태봉이 서북오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6,70군데가 있어 각 도의 관찰사가 관리하여 왔었다. 그러나 관찰도가 폐지된 후 즉 나라가 합병된 후로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음으로 충우에 파괴되자 일부 민간에서는 …(중략)… 자기 조상의 유골을 묻어버리기도 하고 태봉 안에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을 도적하노라고 도굴도 하여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왕직에서는 각 태옹을 한 군데 모으고 전부를 불하하기로 되었다.²⁶⁾

24) 『매일신보』 1928.09.10. ‘각지명산에 피시엇든 이왕가 선대태봉 이장’

25) 태살 부속 삼림의 벌채와 사후 관리의 미비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됨.

26) 『동아일보』 1928.04.06. ‘60여 태봉, 一處도 無完’.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태실에 대한 관리가 점차 곤란해짐에 따라, 각지에 산재한 태실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보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했다. 특히 관리의 공백이 심화되면서 민간에 의한 암장과 도굴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태옹 및 관련 시설의 훼손 가능성 또한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왕직은 태옹을 각 지역에 분산된 상태로 방치하기보다 일정한 장소로 집합시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⁷⁾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태실 부지를 더 이상 왕실 관련 시설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해당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초 이왕직은 각지에서 경성으로 이운한 태옹을 경성 수창동 소재 봉상시 구내에 보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왕실 의례 및 관련 시설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보관 장소가 서삼릉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태실의 정리와 이전이 단순한 개별 유적의 이동이 아니라, 왕실 유산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의 재편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런 방침에 대해 전주이씨 종중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²⁸⁾ 종중의 입장에서 태실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시설이 아니라, 왕실의 혈통성과 상징성을 표상하는 의례적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적 필요가 우선시되면서, 결과적으로 태옹은 오늘날 알려진 바와 같이 서삼릉으로 이안되어 보관되었다. 본래 태실이 위치하였던 토지의 상당수는 민간 소유로 전환되었다.

27) 처음 이왕직은 경성으로 옮겨 온 태옹을 경성 수창동에 위치한 봉상시 구내에 보관할 요량이었다가 결국 서삼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아일보』 1928.03.01. '39개처 태봉, 서삼능역에 이안.'

28) 위의 기사.

민간이 태실 부지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 배경에는 1920년대 후반 이왕직이 시행한 매각 방침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이왕직은 별채적지에 해당하거나 더 이상 왕실 재산으로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태실 소재지를 민간에 처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졌다. 공주 태실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공주 태실의 경우 1928년 소유권이 이왕직에서 민간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태실 부지의 민간 매각이 단순한 방침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집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실 부지의 민간 매각은 관리상의 편의뿐 아니라 궁핍한 이왕직 재정을 보충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이왕직은 재정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재정적 제약에 직면해 있었으며, 보유 자산의 처분은 수입 확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태실 부지는 상징적·의례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의 관점에서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에 소재하였던 인종 태실을 들 수 있다. 해당 태실의 면적은 40정보에 달하였고, 그 가액은 6천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²⁹⁾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6천 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며, 단순한 토지 처분 이상의 재정적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표 1>에 따르면 이 금액은 1930년 한 해 이왕직 삼림 수입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였다. 이는 개별 태실 부지의 매각만으로도 이왕직이 상당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태실 부지의 민간 매각이 이왕직의 재정 운영과 밀접하게

29) 『조선일보』 1928.10.29. ‘은해사유산’.

연관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1920년대 후반 이루어진 태실의 정리, 태옹의 이전, 그리고 부지의 민간 매각은 단순한 유적 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식민지기 이왕직이 왕실 유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재편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전통적 의례 공간이 근대적 행정 논리와 재정 논리 속에서 재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본래 태실이 지녔던 의례적·상징적 의미는 점차 약화되었고, 그 대신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태옹은 서삼릉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집합적으로 보관되었으며, 본래 태실이 자리하였던 부지는 민간 소유지로 편입되어 이전과는 상이한 성격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V. 맺음말

일제강점기 이왕직은 매년 180만 원의 세비를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능원묘 유지비·종친 보조비·창경원 경비·직원 급여·도쿄 별장 유지비 등으로 나갔다. 이왕직의 지출 규모는 1920년대에 접어들어 갈수록 증가했지만, 이를 감당할만큼 세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 탓에 이왕직은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능원묘와 태실 부속 임야에서 나무를 채취해 판매하는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왕직 재산은 원래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제실유 재산)을 기반으로 했는데, 그 상당 부분이 1907년 ‘제실유 및 국유재산 정리’ 정책으로 국유로 편입되는 바람에 규모가 축소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이왕직이 유지할 수 있었던 재산은 능원묘 부속지에 그치게 되었다. 이 능원묘 부속지의 상당 부분은 산림이었는데, 일제가 임야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삼림조합을 설치한 뒤로는 목재 및 땔감을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원묘 및 태실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게 되었다.

이왕직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능원묘 및 태실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상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입을 이용해 이왕직 재정을 운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왕직은 재정난 속에서 태실 부속 임야의 목재를 매각해 수입을 얻었으나, 인공 복구를 수행할 여력이 없어 해당 산림은 방치되고 말았다. 그 결과 태봉 주변에서 불법 압장과 도굴이 빈발했고, 이런 일이 오래됨에 따라 태봉 관리가 소홀하다는 우려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이왕직은 태옹을 경성(서삼릉)으로 옮긴 뒤 태실 부속 임야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책을 세웠다. 이 대책은 실행에 옮겨졌으며, 그 결과 오늘날 상당수 태봉이 민간 소유지로 남아 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朝鮮總督府官報』

『調査局去來文』 규 17827.

국가기록원 문서 관리번호 CJA0003921 ‘昭和5年度李王家豫算’

김종수(2020),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문화재』, 제53권 제1호.

배재수 · 김은숙(2019), 「1910년 한반도 산림의 이해: 조선임야분포도의 수치화를 중심으로」, 『한국산림과학회지』, 228호.

배재수(2000), 「임적조사사업(1910)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과학회지』, 제89권 제2호.

신명호(2015), 「일제강점기 이왕가 재산의 구성과 관리-기본재산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부경대학교)』, 제16권 제4호.

조석곤(2005), 「토지조사사업 국유지분쟁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 『대동문화연구』, 50.

최병택(2021), 「조선후기 산림황폐화 현상과 일제 당국자의 산림 문제 인식 검토」, 『역사와경계』, 118.

The Disposal of Taesil by the Yi Royal Office(李王職)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ung Taek Choi*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Yi Royal Household Office (Iwangji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forest lands attached to royal placenta burial sites (taesil). From the 1920s onward, the Iwangjik faced severe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increasing fixed expenditures, stagnating stipends, and the burden of repaying debts incurred from the funeral of Emperor Gojong in 1919.

A significant portion of royal property had already been reduc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Imperial and State-Owned Properties” in 1907. Moreover, the process of determining ownership of forest lands was fraught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ambiguous boundaries between forests and arable land. Although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ttempted to redefine the concept and ownership of forest lands through the Forest Land Survey Project and related regulations in the 1910s, these policies often conflicted with customary practices of forest use and generated considerable confusion. Nevertheless, the boundaries of forests attached to royal tombs and taesil under the Iwangjik were delineated relatively early.

To secure revenue, the Iwangjik sold timber and firewood produced from these forests through intermediaries, a practice closely related to the changing distribution system of forest products at the time. However,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capacity for reforestation, many logged areas were left unmanaged, leading to frequent illegal burials and grave looting around taebong sites. In response, the Iwangjik relocated

* Professor at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E-mail: newcbt@gjue.ac.kr)

the placenta jars (taeong) to Gyeongseong (present-day Seoul) in the late 1920s and proceeded to sell the taesil-affiliated lands to private individuals.

Ultimately,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taesil by the Iwangjik demonstrate not merely a strategy for financial supplementation, but also the process through which traditional royal spaces were dismantled and privatized under colonial rule.

Keyword: Iwangjik, Taesil, Forest Land Survey Project, Forest Law, Royal Property, Japanese Colonial Period, Forest Product Distribution